

조나단 에드워즈의 교회론 - 언약공동체로서의 교회

한동수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초록

1950년 이후 영미권을 중심으로 조나단 에드워즈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 이후에 본격적인 연구 활동이 진행되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에드워즈의 교회론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이 소고는 에드워즈의 교회에 대한 견해를 그의 언약신학적인 입장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17~18세기 뉴잉글랜드 교회들이 교회의 순수성을 잃지 않음과 동시에 교회의 존립에 위협도 받지 않기 위해 여러 차례 교회론의 변화를 추구하던 때에, 에드워즈는 본래 청교도 정신으로 돌아가 교회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 애를 썼다. 그는 교회가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구속 언약과 그 언약에 근거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맺어진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언약공동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그는 이 영광스러운 공동체 안에 들어가 교인이 되는 것을 엄중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보고, 사역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후보자의 신앙 고백을 엄격하게 요구한다. 또한, 그는 한편에서는 전통적인 개혁주의 입장에 따라 비가시적인 교회와 가시적인 교회를 구분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가시적인 교회라도 실제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신중하게 분별하여 받아들여 함을 이론적으로 역설한다. 그런 점에서 그는 가시적 그리스도인들과 가시적 교회에 대한 일반인들의 오해와 방만함을 경계하기 위해 외면언약과 내면언약의 구분을 인정하지 않고, 외면언약을 맺는 사람들이 내면적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해야 함을 강조한다.

주제어

조나단 에드워즈, 교회론, 언약신학, 언약공동체, 구속언약, 은혜언약

1. 들어가며

1949년 페리 밀러의 전기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1703-1758)는 미국에서 매우 중요하고 인기 있는 연구 주제가 되었으며, 어느덧 우리나라 신학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한국 신학자들이 에드워즈에 관한 연구 논문을 본격적으로 내놓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인데, 특히 새로운 천년에 들어서서 에드워즈 연구는 폭발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그동안 한국의 신학자들이 주목한 에드워즈의 사상은 그의 부흥관, 회심 및 칭의론, 성화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의 설교와 목회에 관한 연구들도 이따금 발표되었다.¹⁾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에드워즈의 교회론에 대해서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연구가 부족하다. 에드워즈가 노샘턴 교회를 떠나게 된 주된 원인이었던 성찬논쟁에 관한 연구들은 있었지만,²⁾ 교회론 전반에 관해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다.³⁾ 사실, 조나단

1) 한국 에드워즈 학자들의 지난 연구 동향과 특징에 대해서는 필자의 “Jonathan Edwards in Korea: A History of Jonathan Edwards,” Ph.D dissertation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2019), 제5장을 보라.

2) 예를 들어, Alan D. Strange, “Jonathan Edwards on Visible Sainthood: The Communion Controversy in Northampton,” *Mid-America Journal of Theology* 14/1 (2003): 97-138; William J. Danaher, “By Sensible Signs Represented: Jonathan Edwards’ Sermons on the Lord’s Supper,” *Pro Ecclesia* 7/3 (1998): 261-87; 박응규,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시적

에드워즈에게 확고한 교회론이 없었다는 오해가 종종 있어 왔다. 예를 들어, 롤란드 베인턴은 그의 책 『예일대학 시절과 사역』(*Yale and the Ministry*)에서 에드워즈가 “개인의 회심에 너무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종종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다.”⁴⁾고 비판했다. 또한, 데릴 하트(Darryl Hart)도 에드워즈는 마음의 종교를 추구하는 신학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는 사실상 그에게 큰 의미가 없었다고 주장했다.⁵⁾ 그러나 에드워즈의 교회론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연구서를 저술한 라이스 베전트(Rhys S. Bezzant)는 그의 책 『조나단 에드워즈와 교회』(*Jonathan Edwards and the Church*)에서 에드워즈의 사역 초기부터 말까지 그의 교회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추적하면서 특히 에드워즈의 교회론이야말로 그 당시 격변하던 부흥에 대한 그의 반응에서 가장 본질적인 원리였다고 주장한다.⁶⁾ 다시 말하면, 에드워즈의 교회론은 부흥의 시대에 마치 “나침반과 같아서 부흥의 물줄기와 암초들을 피해 항해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이다.⁷⁾ 또한, 제럴드 맥더모트도 “에드워즈는 개혁주의 신앙을 멸시하는 지성인들에 대항하는 전사였을 뿐 아니라, 교회를 위해 신학하는 신학자였다. 그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고 세상을 향한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돕기 위해 신학을 했던 가장 탁월한 목회자였다”고 일갈한다.⁸⁾ 그러므로 에드워즈에게 확고한 교회론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에드워즈가 교회론을 개괄하는 개론서와 같은 글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을 뿐이라고 본다. 예일대학교에서 편찬한 『조나단 에드워즈 전집』(*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제12권에는 에드워즈가 시무했던 교회와 이웃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들과 관련해서 그가 썼던 글들을 모아놓았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에 대한 그의 생각들을 엿볼 수 있

성도개념과 노스햄프턴 교회에서의 목회사역,” 『개혁논총』 46 (2018): 117-147; 송희준, “에드워즈의 종교적 양심에 관한 연구”, 평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정도가 에드워즈 교회론에 관한 연구물이다.

- 3) 대표적으로, Douglas A. Sweeney, “Church” in *The Princeton Companion to Jonathan Edward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2005): 167-89와 Rhys S. Bezzant, *Jonathan Edwards and the Church* (New York: Oxford University, 2013)가 가장 포괄적인 연구물이다.
- 4) Roland H. Bainton, *Yale and the Ministry: A History of Education for the Christian Ministry at Yale from the Founding in 1701* (New York: Harper & Brother, 1957), 31.
- 5) Darryl G. Hart, “The Church in Evangelical Theologies, Past and Future,” in *The Community of the Word: Toward an Evangelical Ecclesiology*, eds. M. Husbands and D. J. Treier (Downers Grove, IL: IVP, 2005), 31.
- 6) Bezzant, *Jonathan Edwards and the Church*, 3. 베전트는 이 책에서 에드워즈의 생애를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의 생애와 사역이 그의 교회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서술한다. 첫 시기(1703-1734)에 관한 논의에서는 에드워즈의 교회론이 생애 초에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다루고, 두 번째 시기(1734-1746)에 관해서는 에드워즈가 부흥의 시대에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한 흔적이 그 시기의 주요 저서들(부흥관련 저서들과 『구속사』)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추적한다. 그리고 세 번째 시기(1747-1758)에 관한 논의에서는 에드워즈가 미래의 영광스러운 교회에 관해 어떤 전망을 가졌는지 그 시기의 또 다른 저서들(기도함주회, 브레이너드의 생애, 고별설교 등)을 분석하여 서술한다. 베전트는 이 세 시기 중에서 첫 번째 시기에 사실상 에드워즈의 교회론이 형성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여기에서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① 첫째는 ‘회심’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에드워즈가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되고, 외할아버지 솔로몬 스토타드의 준비주의와 결별하여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려 했는지 서술하고, ② 둘째는 에드워즈가 살았던 시대의 혼란과 관련해서 그가 지상교회를 두 세계 속에서 사는 존재로 인식했음을 드러낸다. 그리고 ③ 셋째는 에드워즈가 계몽주의의 도전에 맞서 어떻게 교회를 지키려 했는지 서술하며, ④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안에서 교회의 공동체성의 원형을 찾으려 했음을 밝힌다. 베전트의 논의가 포괄적이기는 하나 에드워즈가 가지고 있던 언약신학에 주목하지 않았으므로, 이 소고는 베전트의 논의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며 차별된다고 본다.
- 7) Bezzant, *Jonathan Edwards and the Church*, 3.
- 8) Gerald R. McDermott, “Jonathan Edwards, Theologian for the Church”, *Reformation & Revival*, 12/3 (2003), 18.

다. 그러나 에드워즈는 이 몇 개의 글뿐 아니라, 그의 『신학묵상집』(*The Miscellanies*)의 많은 항목과 여러 설교에서 교회에 관한 사상을 남겨놓았다. 따라서 이 모든 자료를 세심하게 연구하면 적어도 에드워즈의 교회론이라 부를 만한 사상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소고는 에드워즈의 교회론 연구를 복돋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이 목표하는 바는 에드워즈의 교회론 전반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다만, 에드워즈가 이해한 교회론을 그의 언약 신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즉, 교회를 언약공동체로 인식하는 그의 신학을 정리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그의 신학체계 안에서 언약 개념의 중요성,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 안에서의 교회, 한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데 필요한 자격과 언약 맺음 등에 관한 그의 입장을 연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에드워즈보다 두 세대 전에 있었던 새뮤얼 루더포드(Samuel Rutherford, c. 1600-1661)와 토머스 후커(Thomas Hooker, 1586-1647)의 은혜언약에 대한 이해와 그 이후의 뉴잉글랜드 언약사상 변천, 그리고 에드워즈의 입장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교회론과 관련한 그의 언약신학이 전통적인 개혁주의 신학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다. 따라서 이 모든 주제를 다루기 위해 에드워즈의 『신학묵상집』(*Miscellanies*)의 항목들 가운데 교회와 관련된 모든 항목과 언약에 관한 모든 항목, 『조나단 에드워즈 전집』 제12권(*Ecclesiastical Writings*)의 모든 글, 그리고 관련성 있는 그의 설교들을 모두 원자료로 삼을 것이다. 또 루더포드와 후커의 저서와 뉴잉글랜드 언약신학에 관한 자료들도 참고할 것이다.

2. 뉴잉글랜드의 교회언약⁹⁾ 신학의 변화

163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보스턴에 도착한 이후, 17세기 중반 뉴잉글랜드에서는 교회와 관련하여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들이 대서양을 건너면서 꿈꾸었던 순수하고 경건한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의 문제였다. 1646년에 노회가 소집되어 1648년에 발표한 케임브리지 선언(Cambridge Platform)에 의하면, 한 사람이 지역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 그 교회 사역자들에게 점검받아야 했다(제12장 2조).¹⁰⁾ 또 신자들의 자녀들은 유아세례와 함께 언약 아래 있었고, 성장하는 동안 자기의 신앙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했다(제12장 7조).¹¹⁾ 그들이 스스로 신앙고백을 완전하게 하지 않는 한 성찬에 참여할 수 없었으며, 그들의 교회 회원권도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은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신앙 경험과 고백을 요구했지만, 일세대의 자녀들이 성장하는 동안, 그들이 제시하던 기준이 지나치게 이상적일 뿐 자녀들에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실제로 일세대 청교도들은 박해 속에서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이상적인 기준에 적합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었지만, 박해를 경험하지 않은 그들의 자녀들은 모두 교회가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에 부합할 만큼 신앙적으로 철저하거나 성숙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기에 실질적인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렇게 유아세례를 받고 성장하여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기의 확실한 신앙고백을 하지 못하여 교회의 완전한 회원권을 얻지 못한

9) ‘교회언약’이라는 용어는 1648년 케임브리지 선언(Cambridge Platform) 제4장 3조에 따르면, 한 사람이 교회 안에 회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가시적으로 언약을 맺는 것을 가리킨다. “이 형태는 가시적인 언약, 동의 또는 합의다. 이에 의해 성도들은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며,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규례들을 준수하기로 다짐한다. 이것을 가리켜 보통 교회언약이라 부른다. 왜냐하면, 이 방법 외에는 어떻게 교인들이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권력을 가질 수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Williston Walker, *The Creeds and Platforms of Congregationalism* [New York, NY: Scribner, 1893], 207-8). 그러나 이 용어가 가지는 세 가지 의미는 이 소고의 뒷부분 “내면언약과 외면언약”에 대한 논의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10) Walker, *The Creeds and Platforms of Congregationalism*, 222.

11) Walker, *The Creeds and Platforms of Congregationalism*, 224.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유아세례를 베풀어 그들을 언약 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가 관건이었다. 존 코튼 등은 자녀들의 양육 책임이 부모에게만 있지 않고 할아버지에게도 있다는 논리로 그들의 손자에게 유아세례를 베풀어도 된다고 주장했다.¹²⁾ 그러나 여전히 적어도 회심한 것이 가시적으로 증명된 자들로 이루어진 순수한 교회를 유지해야 한다는 일세대의 이상은 큰 위기에 빠져들고 있었다. 이때 교회가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였다.¹³⁾ 첫째, 성장한 자녀들이 참된 회심을 경험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들이 경건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기만 하면 교회의 정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교회는 즉시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었다. 두 번째 대안은 유아세례를 받고 자란 후에 참된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교회의 정회원으로서의 일체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교회의 정회원권이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점차 교인수가 줄어들게 될 것이었다. 세 번째 대안은 바로 타협안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중도언약(Half-Way Covenant)이었다.

1657년 목회자 협의회가 모여 이 세 번째 대안을 마련하고, 그것이 1662년 노회에서 최종적인 합의를 보게 된다. 우선 매사추세츠 대표 13명의 목회자와 코네티컷 대표 4명의 목회자가 1657년 6월 4일 보스턴에 모였다.¹⁴⁾ 15일간 계속된 이 회의에서 비록 만장일치의 합의가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중도언약의 기본 원리들이 마련되었다. 회심하지 않은 회원들의 자녀들도 그의 부모가 언약공동체의 일원이므로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성찬에 참여하고 투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적인 신앙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었다. 이 결정이 의미가 있는 것은, 1648년의 케임브리지 선언이 회피했던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여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결정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1661년 매사추세츠 의회는 더 큰 규모의 노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하는데, 그 이유는 대체로 세 가지였다.¹⁵⁾ 첫째, 보스턴에서 모인 목회자 협의회는 그 참석수가 적어 권위 있는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둘째, 1648년 케임브리지 선언과 1657년 목회자 협의회 결정은 세례와 정회원 자격 문제에 관해 교회들이 만장일치로 따를 수 있는 일정한 명제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셋째, 1660년 영국 본토에서 왕정복고로 즉위한 찰스 왕은 교회의 형태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뉴잉글랜드의 다양한 견해들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이유로 인해 1662년 12월에 매사추세츠 의회는 노회 소집을 명했고, 이듬해 3월 80명 이상의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보스턴 제일교회에 모였다.¹⁶⁾ 이 회의에서 조나단 미첼(Jonathan Mitchel)과 리처드 매더(Richard Mather)는 중도언약에 찬성하는 대표적인 목회자들이었고, 찰스 촌시(Charles Chauncy)와 인크리즈 매더(Increase Mather)는 중도언약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목회자들이었다.¹⁷⁾ 미첼은 이 회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마침내 중도언약에 관한 명제들을 작성하였다. 노회가 마친 후 10월 8일, 4명의 목회자 대표들이 매사추세츠 의회에 노회의 결정사항을 보고하였고, 그 내용이 출판되었다.¹⁸⁾ 중도언약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심하지 않은 교회 회원은 과도적인 교회 회원권을 소유하지만, 성찬에 참여할 수 없으며,

12) Peter De Jong, *The Covenant Idea in New England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45), 101.

13) Mary Currie, "The Puritan Half-Way Covenants: A Contemporary Issue," *Austin Seminary Bulletin* 95/3 (1979), 30-31.

14) Currie, "The Puritan Half-Way Covenants: A Contemporary Issue," 33.

15) Currie, "The Puritan Half-Way Covenants: A Contemporary Issue," 34.

16) 중도언약 노회(Half-way synod) 소집의 발단과 전개,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에 관해 가장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연구서는 R. G. Pope, *The Half-way Covenant: Church Membership in Puritan New England*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1969)가 대표적이다.

17) Pope, *The Half-way Covenant*, 49-52.

18) 네 명의 대표자는 John Wilson, Richard Mather, John Allin, Zechariah Symmes였다. Pope, *The Half-way Covenant*, 53.

교회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다. 단, 그들의 자녀들은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기본적인 진리들에 동의하고, 자기가 속한 지역교회의 치리에 복종하기로 서약해야 한다.¹⁹⁾

이로써 세례와 교회 회원권에 관한 문제, 더 나아가서는 교회언약에 관한 문제에 해답을 얻는 듯 했다. 그러나 이 중도언약이 모든 교회로부터 즉시 환영을 받거나 인정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이 문제는 그 이후에도 1690년대까지 계속해서 치열한 논쟁거리가 되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매사추세츠 의회가 노회의 결정사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²⁰⁾ 페리 밀러가 록스버리교회, 찰스타운교회, 보스턴 제3교회, 그리고 도체스터교회 등 네 개 교회의 정회원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이 교회들이 중도언약을 받아들여 유아세례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1677년에 이르러서였다.²¹⁾ 엘리예제르 매더와 인크리즈 매더 형제는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도언약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으며, 만일 중도언약을 용인하면 교회는 반드시 그 거룩함과 경건함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²²⁾

1670년대에 이르러서는 중도언약의 문제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인크리즈 매더와 솔로몬 스토다드가 이 중도언약에 근거하여 교회의 회원권이 어디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해 논쟁했다. 인크리즈 매더는 처음부터 중도언약을 반대했으므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도 매우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할 것을 주장한 반면, 스토다드는 최대한 확장해서 적용하려고 했다.²³⁾ 그는 세례와 성찬이 모두 성례라는 점에서 두 성례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만일 세례를 ‘출생’에 근거해 시행할 수 있다면, 성찬에만 유독 완전한 회심을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성찬을 “회심과 구원에 이르는 은혜의 수단”으로 여겨, 유아세례를 받고 성장하여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비록 회심하지 않았더라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1657년에 20명의 목회자가 처음으로 중도언약에 관한 합의를 시작한 이후에 스토다드에 이르러서는 교회언약에 대한 개념이 가장 넓게 확대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모두 지난 후, 18세기 초중반에 서부 매사추세츠에서 사역한 에드워즈는 그동안 점차 느슨해진 교회언약의 시행을 옛 청교도들의 정신으로 되돌리려고 했던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에드워즈는 개혁주의 언약사상을 재조명했으며, 그의 신학체계 안에서 새롭게 정립했다. 그리고 교회언약을 구속언약과 은혜언약의 틀 안에서 정리하려고 애를 썼다. 에드워즈에게 ‘언약’은 그의 신학체계의 근간이다.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신학을 펼칠 때 구속언약과 은혜언약을 근간으로 삼위일체의 경륜을 논하고,²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도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맺은 구속언약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사역이었다는 관점에서 설명하며,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문제도 구속언약과 은혜언약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마찬가지로 그는 한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도 은혜언약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19) 노회에 제출된 일곱 개의 명제 중 다섯 번째 명제가 이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Pope, *The Half-way Covenant*, 63.

20) Currie, “The Puritan Half-Way Covenants,” 35.

21) Katharine Gerbner, “Beyond the ‘Halfway Covenant’: Church Membership, Extended Baptism, and Outreach in Cambridge, Massachusetts, 1656-1667”, *The New England Quarterly* 85/2 (2012), 288.

22) Pope, *The Half-way Covenant*, 56-57.

23) 스토다드가 중도언약을 더 확대 적용하게 되는 과정과 그의 의도를 자세한 논의한 논문으로는 Karl Keller, “The Loose, Large Principles of Solomon Stoddard,” *Early American Literature* 16 (1981): 27-41; Robert Lee Stuart, “‘Mr. Stoddard’s Way’: Church and Sacraments in Northampton,” *American Quarterly* 24/2 (1972): 243-253 등을 보라.

24) Jonathan Edwards, “The ‘Miscellanies,’ no. 1062,”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20: *The “Miscellanies,” 833-1152*, ed. Amy Plantinga Pauw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2002), 430-443.

3. 구속 언약과 은혜언약 안에서의 교회

1731년 에드워즈가 시무하던 노샘턴 교회에서 간통 사건이 발생했다. 코플(Cople)이라는 여인이 결혼 후 7개월 만에 아이를 출산한 것을 두고 이것이 결혼 전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 의한 것 인지가 문제였는데, 교회는 햄프셔 카운티 목회자협의회에 편지를 보내 이 사건을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카운티 협의회 목회자들이었던 아이작 촌시(Isaac Chauncy)와 윌리엄 랜드(William Rand)는 이것이 간통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이 일이 있던 직후, 에드워즈는 베드로전서 2:9을 본문으로 행한 “그리스도인, 택하신 세대”(Christians a Chosen Generation)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 사건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교회가 어떤 존재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에 대해 설교했다. 그중 한 포인트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택하셨다. 단지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택하셨다.”²⁵⁾는 것이다.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점에서 교회는 전혀 다른 족속이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모두 땅에서 났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자손이다.”²⁶⁾ 아담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첫 번째 사람이며, 교회의 설립자(founder)이고, 교회의 계보의 첫 사람이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해 교회가 거의 멸절될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후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셨다. 하지만 민족적 이스라엘이 참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서 참으로 경건한 자들만 참 이스라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왔으므로 결국 본래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²⁷⁾

성부 하나님이 영원 전에 그의 교회를 택하셨다는 것은, 곧 영원 전에 그의 비가시적인 교회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의미다. 다만 창세 전에 교회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성부가 영원 전부터 교회와 직접 언약을 맺을 수는 없다. 따라서 에드워즈는 이것을 구속언약과 은혜언약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성부 하나님은 영원 전에 성자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이 구속언약이다.²⁸⁾ 이 언약에 따라 신자들은 영원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도록 택함 받았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에 신자들의 구원자로 택함 받고 지명되었다. 이때 성부 하나님께서 타락한 죄인들을 구속하시려는 ‘결정’이 그 방법에 관해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심보다 우선된다.²⁹⁾

이 구속언약에 근거한 두 번째 언약이 은혜언약인데,³⁰⁾ 에드워즈는 이것을 가리켜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들 또는 신부(교회)와 맺는 “결혼언약”이라고 비유한다.: “또 다른 언약이 있는데, 그리스도와 영혼들 사이의 결혼언약이다. 이것은 연합의 언약으로, 이를 통해 영혼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³¹⁾ 에드워즈는 창조 전 하나님의 작정 순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창조와 선택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창조와 선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며,³²⁾ 하나님의 주된 창

25) Jonathan Edwards, “Christians a Chosen Generation,”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7, *Sermons and Discourses, 1730-1733*, ed. Mark Valeri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99), 281.

26) Edwards, “Christians a Chosen Generation,” 285-6.

27) Edwards, “Christians a Chosen Generation,” 286.

28) Edwards, “Christians a Chosen Generation,” 282.

29) Edwards, “The ‘Miscellanies,’ no. 1062,” 431-2.

30) 에드워즈의 언약 신학 안에서 구속언약과 은혜언약은 분명하게 구별된다. 두 언약의 순서도 다르고 언약 당사자도 엄격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그는 교회에 관해 논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맺으시는 은혜언약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구속언약에 근거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교회가 구속언약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음을 강조하려고 한다.

31) Jonathan Edwards, “The ‘Miscellanies,’ no. 825,”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8: *The “Miscellanies,” 501-832*, ed. Ava Chamberlai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2000), 536; 또한 “The ‘Miscellanies,’ no. 617도 보라.

32) 에드워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 창조 - 타락 - 선택 - 제한적인 구속 - 구속의 적

조 대상은 선택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선택된 배우자”³³⁾라고 불린다. 물론 그리스도가 그의 신부와 맺는 언약은 실제 결혼이 있기 전에는 약속이고 초청에 불과하다. 회심을 통한 결혼이 있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proper) 언약이 된다.³⁴⁾

하나님의 은혜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와 연합시키실 때 비로소 성취되고 실효를 얻게 되었다. 아담이 첫 행위언약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두 번째 언약의 조건을 그리스도께서 충족하셨다. 곧 그리스도께서 새언약의 조건을 이행하셨으므로, 더이상 이행해야 할 것이 남지 않았다. 구원하는 믿음(saving faith)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에게 있는 어떤 조건에 의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는다. 믿음은 그저 구원을 “받고”(receive), “취하는”(take) 것이다. 그러나 이 구원이 무조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맺으시는 언약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드워즈는 “거저 주는 것과 언약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³⁵⁾고 말한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와 맺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신비한 몸과 맺어지며, 이 언약의 조건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고난이다.”³⁶⁾ 사람에게 언약과 구원이 사람에게 거저 주어진다는 것은 사람의 믿음이 결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의미, 또는 사람의 노력으로 조건을 성취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며, 구원을 위해 실제로 그 어떤 조건도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순종과 고난으로 이 언약의 조건이 이미 성취되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조건을 성취하신 이 언약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다.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가 법적으로 하나다: 즉, 언약의 측면에서 하나다.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조건을 이행하심으로써, 그 조건은 마치 교회에 의해 이행된 것이 된다. 만일 누구나 그리스도와 교회를 언약에서 분리한다면, 또한 한 언약이 그리스도와 맺어지고 다른 언약이 교회와 맺어진다고 말한다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법적으로 둘을 만드는 것이다.³⁷⁾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의 구속언약과 은혜언약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불러 모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 사람들이다. 구속언약과 은혜언약(결혼언약)은 모두 교회에게 큰 위로가 되는데, 두 언약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위치는 서로 다르다. 은혜언약을 성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라고 이해할 때, 이것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어진 구속언약의 일

용” 순으로 작정했다고 본다. 그의 사상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는 궁극적인 동기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창조와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emanation) 하고,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되돌리는(remanation)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창조와 하나님의 영광의 관계를 주장한 Jonathan Edwards, “Concerning the End for which God Created the World,”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8: *Ethical Writings*, ed. Paul Ramsey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89), 403-536와 구속에 있어서 인간의 전적인 하나님의 의존성과 하나님의 영광의 관계를 설교한 Edwards, “God Glorified in Man's Dependence,”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7: *Sermons and Discourses, 1730-1733*, ed. Mark Valeri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99):196-216을 보라.

33) Jonathan Edwards, *An Unpublished Essay of Edwards on the Trinity*, ed. G. P. Fisher (New York, C. Scribner's sons, 1903), 133.

34) Jonathan Edwards, “The ‘Miscellanies,’ no. 1064,”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20: *The “Miscellanies,” 833-1152*, ed. Amy Plantinga Pauw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2002), 445.

35) Jonathan Edwards, “The ‘Miscellanies,’ no. 2,”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3: *The “Miscellanies,” aa-zz, 1-500*, ed. Thomas A. Schafer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94), 198.

36) Edwards, “The ‘Miscellanies,’ no. 2,” 198.

37) Edwards, “The ‘Miscellanies,’ no. 2,” 199.

부가 사람에게 계시된 것이다. 그리고 은혜언약을 통해 사람에게 주시는 복들은 이미 성부가 그리스도와 맺으신 언약 속에서 약속된 복들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언약에서는 교회가 명백하게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되는 반면, 구속언약 안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성부와 계약 당사자가 된다.³⁸⁾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은혜언약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맺어진 공동체이므로 이 언약 안에서 모두 함께 유익을 누린다. 그리스도와의 은혜언약 안에 있는 교회가 누리는 유익의 대원리는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고난받으심으로써 성부에게서 얻으신 모든 유익 안에서 그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즐거움을 얻는다는 것이다. 또한, 택자들은 영혼과 육체의 영생을 누리는데, 영생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행복과 영광에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에 동참했으므로 그와 함께 성화와 견인의 유익도 함께 누리는 것이다. 이 모든 유익은 사실상 영원 전에 성부와 성자와 언약을 맺으시고, 또한 성자 안에서 택자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미 약속된 것들이다. 즉,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교회에게 약속된 선물이다.³⁹⁾ 왜냐하면, 창세 전에 성부가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실 때 그리스도는 공적인 분(person)으로서 미래의 온 교회를 그 안에 담고 계셨으며, 그들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셨으며, 그들 모두를 대표하셨기 때문이다.⁴⁰⁾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주어진 약속들이 그의 지체들에게도 주어졌다. 그 후에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모든 지체가 하나씩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으로 들어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경륜 속에 사실상 존재했던 약속들이 명확히 그 지체들에게 계시되고 전달된다.⁴¹⁾

4. 언약을 통해 가시적 교회의 가시적 교인이 되는 길

4-1. 가시적인 교회와 가시적인 그리스도인

그렇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어떻게 실제로 교회에 들어가게 되는가? 또는 교회는 어떻게 실제로 사람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가? 이에 대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교회에 대한 에드워즈의 정의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성경에서 교회라 함은 틀림없이 실제로 또는 적어도 외적으로나 *외관상* 하나님의 백성 또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의미한다. 특정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 함께 모인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 또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 라는 어구에 대해 내가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의 백성, 또는 성도들인 사람들, 또는 외적인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이는 외적인 모

38) Jonathan Edwards, “The ‘Miscellanies,’ no. 617,”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8: *The “Miscellanies,” 501–832*, ed. Ava Chamberlai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2000), 150. 에드워즈는 전통적인 개혁주의 입장에 따라 구속언약의 당사자가 성부와 성자이고, 은혜언약의 당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선명하게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구속언약의 한편 당사자가 된다(being of one of the parties)고 말하는 것은 개혁주의 입장에서 벗어나려는 의도가 아니다. 그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 안에 이미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따라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역설하기 위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39) Edwards, Edwards, “The ‘Miscellanies,’ no. 825,” 537.

40) Jonathan Edwards, “The ‘Miscellanies,’ no. 1091,”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20: *The “Miscellanies,” 833–1152*, ed. Amy Plantinga Pauw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2002), 475.

41) Edwards, “The ‘Miscellanies,’ no. 1091,” 475.

습을 정말로 가진 사람들, 그래서 기독교의 판단에 의해서나 복음의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거나 존중받거나 여겨지는 사람들이다. 또한, 특정한 참된 교회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인 사람들 또는 따라서 기독교의 판단에 정말로 그런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의 거룩한 공적 예배에 실제로 함께 참여한 사람들의 단체여야 한다(이탤릭체 강조).⁴²⁾

이 정의에서 에드워즈는 명시적으로 비가시적인 교회와 가시적인 교회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시적인 교회와 가시적인 교회의 개념이 들어 있다. 비가시적인 교회는 “정말로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된 교회다. 앞에서 구속언약에 근거하여 은혜언약(결혼언약)으로 맺어진 공동체에 이 비가시적인 교회가 속한다. 반면에 가시적인 교회는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정말로” 보이는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다. 또한, 에드워즈는 가시적인 교회와 함께 가시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도 정의하는데, “외견상 그리스도인들, 즉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들” 또는 “외적인 믿음, 즉 믿음의 고백을 소유하고, 가시적인 삶과 대화에서 외적인 거룩함을 소유한 사람들” 또는 “기독교와 은혜언약을 명시적으로 고백하는”⁴³⁾사람들이다. 에드워즈는 이 중에서 가시적인 교회와 가시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데, 그것은 교회언약과 관련된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때문이다. 에드워즈가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복음의 법칙”, “외견상”, “실제로”, “정말로”, “보이는” 등의 단어들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이 가시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아 가시적인 교회에 들어가는 가장 일차적인 방법은 세례를 받는 것이다.⁴⁴⁾ 그리스도와의 결혼언약이 회심을 통해 실현된다고 할 때, 세례는 “사람이 거듭남, 회개, 회심을 통과했음을 나타내는 표”다.⁴⁵⁾ 세례를 받는 사람은 언약을 맺으며 그 자신을 가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한다. 또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신실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그 세례는 그에게 구원을 인쳐준다. 그리고 신실하게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그는 평생 거룩한 삶을 살기로 서약한 것이고 또한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⁴⁶⁾

그러므로 한 사람이 이러한 고백과 서약을 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언약을 맺고 교회 안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의 사역자들은 그가 그리스도께 속했는지를 살펴보고 교회 안에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한다.⁴⁷⁾ 더욱이 에드워즈는 사람들이 적법하게 가

42) Jonathan Edwards, “The ‘Miscellanies,’ no. 339,”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3: *The “Miscellanies,” aa-zz, 1-500*, ed. Thomas A. Schafer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94), 414.

43) Jonathan Edwards, “The ‘Miscellanies,’ no. 335,”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3: *The “Miscellanies,” aa-zz, 1-500*, ed. Thomas A. Schafer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94), 411; 또한 “The ‘Miscellanies,’ no. 345, 377도 보라.

44) 존 칼빈이 『기독교강요』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한 자녀로 인정되기 위해 교회라는 공동체에 가입되는 입문의 표징을 세례라고 한다.” 또한 “세례의 특성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확실히 교회에 들어가는 문이며 일종의 입문식이다. 세례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참가하게 된다.” Calvin, 『기독교강요』, 4. 15. 1; 4. 16. 30.

45) Jonathan Edwards,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3: *Original Sin*, ed. Clyde A. Holbrook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70), 363.

46) Jonathan Edwards, “The ‘Miscellanies,’ no. 595,”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8: *The “Miscellanies,” 501-832*, ed. Ava Chamberlai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2000), 129.

47) Jonathan Edwards, “The ‘Miscellanies,’ no. 65,”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3: *The “Miscellanies,” aa-zz, 1-500*, ed. Thomas A. Schafer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94), 235. 마찬가지로, 교회 안의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를 파문하여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역할도 사역자가 해야 한다.

시적인 교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입교는 교회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허락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사람에게 의한 입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인정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⁴⁸⁾ 사역자들의 주의(主意) 의무는 엄중하게 요구된다. 사역자들이 입교 대상자들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근거는 “복음의 법칙”이다. “복음의 법칙”은 복음의 진리를 믿는다는 마음의 고백을 하고 복음의 윤리적 법칙에 따라 모든 질서에 맞게 행하는 사람들을 적법하게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⁴⁹⁾ 또한 “복음의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실재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가 되셔야 하는 필요성과 충분성을 믿으며, 그 밖에 이것들이 직접 의존하는 다른 교리들을 믿는”⁵⁰⁾ 것이다. 특히 은혜언약에서 신자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다. 아담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에서 아담이 그 언약에 동의(consent)했던 것처럼, 두 번째 언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언약에 동의하셨다. 따라서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의함으로써 그 언약을 나누어 갖는다고 여겨지는 것이다.⁵¹⁾

이 복음의 법칙에 따라, 세례받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몇 가지 사실을 고백하고 서약해야 한다. 첫째, 죄를 고백해야 한다. 왜냐하면, 세례 자체가 죄 씻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둘째, 기독교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할 만한 믿음을 고백해야 한다. 왜냐하면, 세례의 개념은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예식이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평생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약속해야 한다. 왜냐하면, 세례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간의 언약을 인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그리스도께 자신을 헌신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성부 하나님께도 헌신해야 한다.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받는 사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게 온전히 드리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⁵²⁾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전서 2:9의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들이므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치고,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순종의 제사를 드린다.⁵³⁾

교회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고백과 동의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하고, 참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별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엄격한 시험을 사용하되 참 그리스도인인 많은 사람을 제외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다.⁵⁴⁾ 특히 사람들의 특별한 체험, 특별한 발견, 환상, 감정 등을 기준으로 삼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인 수많은 사람이 제외될 수 있다.⁵⁵⁾

4-2. 가시적인 교회의 교인이 되기 위해 거듭남과 회심의 필요성

그러면, 가시적인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거듭남과 회심이 요구되는가? 에드워즈

48) Edwards, “The ‘Miscellanies’ no. 689,” 251.

49) Jonathan Edwards, “The ‘Miscellanies,’ no. 338,”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3: *The “Miscellanies,” aa-zz, 1-500*, ed. Thomas A. Schafer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94), 413.

50) Edwards, “The ‘Miscellanies,’ no. 338,” 413.

51) Jonathan Edwards, “The ‘Miscellanies,’ no. 299,”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3: *The “Miscellanies,” aa-zz, 1-500*, ed. Thomas A. Schafer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94), 386.

52) Jonathan Edwards, “The ‘Miscellanies,’ no. 873,”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20: *The “Miscellanies,” 833-1152*, ed. Amy Plantinga Pauw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2002), 112-3.

53) Edwards, “Christians a Chosen Generation,” 297-8. 한편, 이 설교에서 에드워즈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제사장들로서 드러야 하는 마지막 제물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한다.

54) Edwards, “The ‘Miscellanies,’ no. 338,” 413.

55) Edwards, “The ‘Miscellanies,’ no. 338,” 413.

는 1750년 2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총 다섯 번에 걸쳐 교인이 되는 자격에 관한 강의를 했다. 에스겔 44:9⁵⁶)를 본문으로 한 첫 번째 강의에서, 그는 에스겔이 본 성전 환상이 “복음 성전”, 곧 교회에 관한 묘사라고 보고, 이 본문이 누가 교회에 들어올 수 있고 누가 들어올 수 없는지 선언한다고 설명했다.⁵⁷) 여기에서 에드워즈는 ‘적법하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영적으로 거듭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대답한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사도들과 다른 영적인 인물들이 위선자들에게 세례를 주었으며, 그들이 적법하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례들을 적고 있기 때문이다.⁵⁸) 이것은 유아세례의 원리에서도 잘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 에드워즈의 주장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의 자녀들이 유아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거듭난 것도 아니며, 유아세례를 받고 죽은 아이들이 거듭났거나 은혜의 상태에 들어간다고 말할 수도 없다.⁵⁹) 그러므로 에드워즈는 한 사람을 가시적인 교회 안에 받아들일 때 거듭남과 회심이 교회의 정회원이 될 수 있는 필요조건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러면 적법하게 교회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에드워즈는 이 강의의 핵심교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신앙고백에 있어서,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볼 때, 참된 성도 또는 경건한 사람들 외에는 누구도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뜻이다.”⁶⁰) “합리적인 판단”은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공적인 판단이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교회의 정회원 자격 요건은 거듭남 자체가 아니라, 거듭남의 ‘가시성’(visibility) 또는 ‘명시적 증거’(explicit evidence)다.⁶¹) 에드워즈가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은 “가시성”(visibility)과 “실재성”(reality) 또는 “개연성”(probability)이다. 가시성과 실재성은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 가시적으로 금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반드시 실제로 금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가시적인 금은 실제 금으로 보이기도 하고 받아들여지기도 한다.⁶²) 마찬가지로, 눈으로 보기에 그리고 사람들의 판단에 가시적인 성도는 실제 성도로 받아들여지고, 결코 마귀의 자녀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⁶³) 따라서 가시성에는 개연성이 내포된다. 가시적으로 성도처럼 보인다면 그가

56) 에스겔 44:9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57) Jonathan Edwards, “Lectures On The Qualifications for Full Communion in the Church of Christ,”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25, Sermons and Discourses, 1743-1758*, ed. Wilson H. Kimnach (New Haven: Yale, 2006), 353. 여기에서 에드워즈는 로마서 2:28-29에 근거하여 “마음의 할례”를 “회심”이라고 설명한다.

58) Jonathan Edwards, “The ‘Miscellanies,’ no. 577,”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8: The “Miscellanies,” 501-832*, ed. Ava Chamberlai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2000), 115. 또한, 에드워즈는 “An Humble Inquiry”에서 사도시대의 고린도교회, 갈라디아교회, 에베소교회 그리고 로마교회 등의 예도 제시한다. Jonathan Edwards, “An Humble Inquiry”,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2, Ecclesiastical Writings*, ed. David Hall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94), 237-245. 한편, 에드워즈는 시몬 마구스의 예를 통해, 유아세례의 정당성도 변호하려 한다. 시몬 마구스도 가시적으로만 그리스도인일 뿐 진정으로는 아니었음에도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부모가 가시적으로 그리스도인이기만 하다면 충분히 그의 자녀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59) Edwards, “The ‘Miscellanies,’ no. 577,” 115.

60) Edwards, “Lectures On The Qualifications for Full Communion in the Church of Christ,” 354. 한편, 이 글에서 에드워즈는 “입교를 허락받다”(be admitted into church)와 “성찬 참여를 허락받다”(be admitted to full communion)를 같은 의미로 바꾸어 사용한다. 왜냐하면, 입교와 성찬 참여의 공통된 조건이 세례이기 때문이다.

61) McDermott, “Jonathan Edwards, Theologian for the Church,” 20.

62) Jonathan Edwards, “An Humble Inquiry”,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2, Ecclesiastical Writings*, ed. David Hall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94), 184; Edwards, “Lectures On The Qualifications for Full Communion in the Church of Christ,” 357.

63) Jonathan Edwards, “The ‘Miscellanies,’ no. 337,”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실제로 성도일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가시적으로는 성도지만 가시적으로 진짜 성도는 아니고 단지 외적으로 가시적인 성도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그것은 마치 그 사람이 성도인 것 같은 성도인 것 같다고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아무 말도 아니며, 아무 의미 없이 단어를 나열하는 것과 같다.⁶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위해 언약을 맺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모두 정말로 거듭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시성과 개연성만으로 언약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사랑의 판단”(judgment of charity) 때문이다. 비가시적인 교회의 ‘구원받은 택자들’ 또는 ‘비가시적인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진실에 의한 판단’을 하시는 반면, ‘가시적인 성도들’의 경우에는 겉으로 드러난 외면적인 신앙고백과 행위에 따라 철저히 외면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사랑의 판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에드워즈는 요한일서 2:19⁶⁵⁾을 예로 들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말씀은 자연히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신앙고백을 한 그리스도인이었다가 나중에 거짓으로 판명 나는 사람들은 그들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는 참된 성도의 모임에 속했거나 또는 견인하는 은혜와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처럼 보였다. 그들은 교회의 지체처럼 보였다. 즉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였다. 따라서 사랑의 판단으로 받아들여졌다.⁶⁶⁾

또한, 에드워즈는 로마서 15:14⁶⁷⁾과 고린도전서 1:8⁶⁸⁾에서도 사도 바울이 “긍정적인 사랑의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본다.⁶⁹⁾

‘사랑의 판단’은 개혁주의 전통에서 즐겨 사용된 용어다. 그중에서도 에드워즈가 대표적으로 인용하는 인물은 아이작 왓츠인데, 다음과 같은 그의 주장을 여러 곳에서 자주 인용한다.⁷⁰⁾

가시적인 기독교회는 다음과 같은 전제 위에 세워진다. 즉 가시적인 교회의 지체들은 비가시적인 교회의 지체들이다. 또는 그렇게 보여야 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을 하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것을 서약한 사람들 외에는 누구도 가시적인 교회에 받아들여져도 안 되고 완전한 지체로 여겨져도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사랑의 판단으로 받아들여 참 신자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영적인 나라의 참된 신하들로 여기며, 가시적인 교회의 지체로 여긴다.⁷¹⁾

vol. 13: *The “Miscellanies,” aa-zz, 1-500*, ed. Thomas A. Schafer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94), 412.

64) Edwards, “An Humbly Inquiry”, 185.

65) 요한일서 2:19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66) Edwards, “A Humble Inquiry,” 194.

67) 로마서 15:14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68) 고린도전서 1:8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69) Edwards, “A Humble Inquiry,” 239.

70) Edwards, “An Humble Inquiry,” 335, 342, 343, 347.

71) Isaac Watts, *The Holiness of Times, Places, and People under the Jewish and Christian Dispensations Considred and Compared, in Several Discourses* (London, Bible and Crown, 1738), 194.

‘사랑의 판단’은 또한 존 칼빈도 사용한 용어이기도 하다. 칼빈은 『기독교강요』에서 “믿음의 확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그 대신 *사랑의 판단*으로 대신하셨으며, 그것으로 우리는 믿음의 고백과 삶의 모범과 성례 참여로써 우리와 더불어 같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을 교회의 회원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⁷²⁾라고 주장했다. 또한, 17세기에 영국에서 뉴잉글랜드로 건너온 청교도 일세대 토머스 후커도 ‘사랑의 판단’을 중시했다. 후커는 사무엘 루더포드와 교회언약에 관한 논쟁을 하는 과정(후술하는 바와 같이)에서, 그가 가시적인 교회의 정회원으로 받아들이는 언약을 체결할 때 마치 분리주의자들처럼 ‘진실에 의한 판단’을 함으로써 온전히 회심한 사람들만을 교회 안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루더포드의 주장에 맞서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면서, ‘진실에 의한 판단’으로 위선자를 걸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외면적인 고백과 행위를 근거로 ‘사랑의 판단’을 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사랑의 판단으로 교인을 가시적인 교회 안에 받아들일 때, 교인들 중에 위선자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에드워즈는 이 전통에서 있었으며, ‘사랑의 판단’에 의해 교인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찬성했으므로 가시적인 교회와 비가시적인 교회를 혼동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가시적인 교회 회원의 자격을 쉽게 허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아니다. 에드워즈는 ‘사랑의 판단’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엄중한 임무를 사역자에게 부여한다. 사역자는 교회를 대신하여 한 사람이 참된 성도인지, 또는 경건한 사람인지 공적인 판단을 내린다. 이때 사역자는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능력을 발휘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충분한 대화 후에 그의 진지한 신앙고백을 듣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사역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침으로써 그가 앵무새처럼 기독교 교리를 나열하지 않고 자기의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야 한다.⁷³⁾ 또한, 고백은 단순히 ‘나는 경건합니다’ 또는 ‘나는 회심한 것 같습니다’ 등의 고백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는 고백이어야 한다.⁷⁴⁾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에드워즈는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이 장성한 경우 자기의 입으로 공적인 신앙고백을 하기 전에는 결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⁷⁵⁾ 솔로몬 스토다드와 솔로몬 윌리엄스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스토다드와 윌리엄스는 “사도들이 복음 교회 안에 받아들인 사람들은 교회에 받아들여지기에 합당했다. 그러나 사도들은 철저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많은 사람을 받아들였다. 사실 하나님께서 입교에 관해 주신 법칙을 따라 신중하게 적용하더라도 회심한 사람들보다는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입교한다.”⁷⁶⁾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은 이러한 전제 아래 성찬을 회심의 수단으로 보고, 아직 회심의 증거가 부족한 사람이라도 세례를 받았으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허락했다. 그러나 에드워즈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마음의

72) 존 칼빈, 『기독교강요』 4. 1. 8.

73) Edwards, “Lectures On The Qualifications for Full Communion in the Church of Christ,” 355.

74) Edwards, “Lectures On The Qualifications for Full Communion in the Church of Christ,” 356.

75) 존 칼빈은 유아세례에 관해 논증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유아세례를 반대하는 근거로 그들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제시하자, 이에 대해 반박하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세례에 대해서는 주께서 일정한 연령을 말씀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만찬은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지 않고, 다만 주의 몸과 피를 분간하며 자기의 양심을 검토하고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며 그 힘을 생각할 수 있는 삶들에게만 제공하신다. ... 그러므로 우선 자기반성이 있어야 하며, 이것은 유아들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Calvin, 『기독교강요』 (1559) 4. 16. 30.

76) Solomon Stoddard, *An Appeal to the Learned* (Boston, MA: B. Green, 1709), 16; Edwards, “An Humble Inquiry,” 186에 인용; Edwards, “Misrepresentation Corrected,”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2: *Ecclesiastical Writings*, ed. David Hall (New Haven: Yale, 1994), 404에 인용.

할례를 받은 사람이 그와 동시에 그와 관련된 개연성 있는 표지들과 거리가 멀다면, 그리고 그들이 이런 표지들을 갖춘 경우보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다면, 그렇게 가시적인 자격요건들이 어떻게 우리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겠는가?”⁷⁷⁾ 또한, 그는 ‘개연성 있는 모습’(a probable appearance)이 아닌 것은 ‘믿을 만한 가시성 또는 모습’(a credible visibility or appearance)일 수 없다”⁷⁸⁾고 단언한다.

5. 내면언약과 외면언약, 명시적 언약과 묵시적 언약의 구분

그러므로 한 사람이 가시적으로 신앙고백을 하고 외적으로 언약을 맺고 교회 안에 들어온다면, 그는 정말로 그 언약을 따르기로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점에서 에드워즈는 전통적인 청교도 언약신학을 따라 은혜언약 안에 들어오는 사람의 외면언약과 내면언약을 구분하는가? 그렇지 않다. 에드워즈는 오직 하나의 은혜언약만 있을 뿐이고, 신약성경도 이러한 구분을 가정할 만한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다고 말한다.⁷⁹⁾ 이 점은 17~18세기 영국 청교도 신학자들 사이에서 은혜언약을 외면언약과 내면언약으로 구분하던 전통에서 벗어났다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정말로 그러한지, 그리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에드워즈의 입장이 전통적인 견해와 어떻게 다른지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웨스트민스터총회에 대표로 참석했던 영국의 새뮤얼 루더포드(Samuel Lutherford)는 1645년 출판한 『공개된 생명언약』(*The Covenant of Life Opened*)에서 재세례파에 맞서 오직 하나의 언약을 주장했다.⁸⁰⁾ 즉, 하나님의 은혜언약은 오직 하나로서 구약과 신약이 모두 하나의 언약으로 연결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언약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묶는다. 다만 그는 성경의 언약을 두 차원으로 이해한다. 하나는 외면적, 가건적, 고백적, 조건적인 언약이고, 다른 하나는 내면적, 비가건적, 실제적, 절대적인 언약이다. 외면언약은 복음을 전하는 것, 국가 언약, 그리고 가시적인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언약을 가리키는 것으로, 언약 당사자들의 동의와 약속과 조항들이 여기에 포함된다.⁸¹⁾ 반면에 내면언약은 개인의 영혼이 성령에 의해 맺는 언약으로 비가시적인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언약이다. 외면언약과 내면언약의 관계에서 외면적 언약 체결이 내면적 언약 체결에 선행한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외면언약 행위에 해당하므로 복음 설교를 통해 새 마음과 새 영이 탄생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반드시 외면적인 언약 안에 머문 후에야 비로소 내면적인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된다.⁸²⁾

뉴잉글랜드의 청교도 토머스 후커(Thomas Hooker)도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의 은혜언약이 있고, 그것이 외면언약과 내면언약으로 구분된다고 보았다. 특히 그는 이중언약(double covena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 언약은 이중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성경에는 이중언약이 있다. 내면언약과 외면언약이다.”라고 주장했다.⁸³⁾ 또한, 외면언약이 내면언약보다 더 범위가 넓으며, 이 외면언약을 통해 가시적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모두 택자인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왜냐하

77) Edwards, “An Humble Inquiry,” 186.

78) Edwards, “Misrepresentations Corrected,” 406.

79) Edwards, “An Humble Inquiry,” 206.

80) 이 소고에서는 루더포드의 *The Covenant of Life Opened* (Edinburgh: A. Anderson, 1655) 원서와 안상혁이 번역 출판한 『생명언약』(수원: 합신대학교출판부, 2018)을 동시에 참조할 것이다. 인용구들은 기본적으로 『생명언약』에서 가져올 것이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원서로부터 직접 번역하여 인용할 것이다.

81) Samuel Rutherford, *The Covenant of Life Opened*, 안상혁 역, 『생명언약』(수원: 합신대학교출판부, 2018), 194-5.

82) 루더포드, 『생명언약』, 272-3.

83) Thomas Hooker, *The Covenant of Grace Opened* (London: G. Dawson, 1649), 2.

면, 외면언약이 잘못된 근거에 의해 맺어질 수도 있으며, 잘못된 목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⁸⁴⁾ 그러므로 외면언약과 내면언약에 관해 사실상 루더포드와 후커가 입장을 같이 했다. 또한, 후커는 루더포드와 마찬가지로 은혜언약이 구약과 신약에서 공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재세례파가 그 통일성을 부정하려 한다고 비판했다.⁸⁵⁾

이처럼 루더포드와 후커가 근본적으로 은혜언약과 교회론에 있어서 비슷한 입장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루더포드와 후커 사이에는 큰 논쟁이 있었는데,⁸⁶⁾ 그 이유는 후커의 ‘교회언약’ 개념이 마치 재세례파와 비슷하게 참된 신자들만 교회 안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처럼 오해되었기 때문이다.⁸⁷⁾ 그러나 후커를 비롯한 뉴잉글랜드 회중주의자들이 ‘교회언약’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데에는 그들의 상황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의 비분리주의자들은 뉴잉글랜드로 건너오면서 그들은 “언덕 위의 도시”(A City on the Hill)를 건설하기를 꿈꾸었고, 그에 따라 비록 불완전하지만 순수하고 경건한 지상교회를 세우고자 했다. 따라서 그들에게 교회언약은 필수적이었으며, 그것이 교회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첫걸음이었다. 이런 이유로 후커는 『교회치리강요』에서 ‘교회언약’의 유익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명시적인 교회언약에 의해 교회 회원들은 그들의 의무를 더 온전하게 이해하고 확신하는 판단력을 갖게 된다. 둘째, 명시적인 교회언약은 교회 회원들이 주님과 회중 앞에서 그들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한 언약의 조항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것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막아준다. 셋째, 명시적인 교회언약은 교회 회원들의 마음을 더욱 강력하게 결속시킨다.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언약한 것을 지키고 실천하도록 그들의 심령이 고무되고 자극되며, 그들은 언약에 더욱 적극적으로 헌신하게 된다.⁸⁸⁾ 결국, 후커는 루더포드와 마찬가지로 외면언약과 내면언약을 구분하기는 했지만, 교회언약을 통해 성도들에게 더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 교회를 하나로 묶으려는 의도를 가졌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점이 뉴잉글랜드 회중주의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으면, 에드워즈에게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루더포드와 후커의 견해들과 비교할 때 에드워즈의 입장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루더포드, 후커, 에드워즈 모두 하나의 은혜언약을 주장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에드워즈가 외면언약과 내면언약의 구분을 부인한 점은 루더포드와 후커의 전통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과연 에드워즈는 개혁주의 전통을 버린 것일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에드워즈가 외면언약과 내면언약의 구분을 반대한 이유는 무엇일까? 데이비드 홀은 에드워즈가 영국의 토머스 블레이크와 솔로몬 스토타드 등의 주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주장한다.⁸⁹⁾ 영국 스태포드셔 탐워스(Tamworth, Staffordshire)의 장로교회 목사였던 블레이크는 외면언약과 내면언약을 구분하면서, 외면언약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았다. 그가 생각하는 외면언약은 한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나 세례를 받을 때 맺는 외적인 서약으로 정의상으로는 후커가

84) Hooker, *The Covenant of Grace Opened*, 4.

85) Hooker, *The Covenant of Grace Opened*, 4.

86) 이른바 루더포드-후커 논쟁으로 알려진 이 논쟁은 후커를 비롯한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이 주장한 ‘교회언약’에 대해 전통적인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한 루더포드의 주장과 뉴잉글랜드의 비분리파 회중주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한 후커의 주장 사이의 신학 논쟁이다. 이 논쟁에 관해서는 국내에서 발표된 가장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안상혁, “뉴잉글랜드 청교도의 교회언약과 절반언약의 성격,” 『한국교회사학회지』 30 (2011): 151-182을 보라. 이 글은 또한 안상혁이 그의 박사학위논문을 단행본으로 출판한 『언약신학, 쟁점으로 읽는다』 (서울: 영음사, 2014) 제 7장에도 수록되어 있다.

87) 페리 밀러(Perry Miller)가 그의 *The New England Mind: The Seventeenth Century* (Boston, MA : Beacon Press, 1961)에서 뉴잉글랜드 회중주의자들의 ‘교회언약’ 개념이 영국 청교도들의 전통에서 벗어난 신학이었다고 비판한 이래, 많은 사람이 이 주장을 따랐지만, 안상혁은 이 점에 대해 반박하면서 그것이 루더포드의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권위 있게 논증한다.

88) Hooker, *A Survey of the Summe of Church-discipline*, 48-9.

89) Edwards, “An Humble Inquiry,” 206, 각주 1.

주장한 명시적 언약과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블레이크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사람의 참된 믿음과 거듭남을 확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므로, 교회 회원권과 세례를 주기에 앞서 믿음과 회개를 조건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믿음과 회개가 회원권과 세례의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가 3,000명에게 세례를 줄 때와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줄 때 거듭남과 믿음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⁹⁰⁾

이러한 블레이크의 주장은 루더포드가 외면언약을 정의했던 방식과 다르다. 루더포드는 내면과 외면언약 모두에서 요구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명확하게 주장했다. 외면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정당하게 세례를 받고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으며, 사도행전 8장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도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다.⁹¹⁾

결국, 블레이크가 외면언약과 내면언약을 구분하는 방식은 루더포드와 후커가 구분했던 방식과 다르며, 따라서 에드워즈는 루더포드와 후커의 구분방식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블레이크와 스토다드 등의 구분방식을 부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에드워즈는 루더포드와 마찬가지로 은혜언약 안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믿음을 강하게 요구한다: “사람이 언약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언약에서 사람의 몫을 해야 한다. 언약에서 사람의 몫은 믿음이고, 그리스도의 몫은 구원이다. 믿음을 고백하지 않거나 이 언약에서 자기의 몫을 부담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틀림없이 언약을 소유하지 못한다.”⁹²⁾ 또한,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한 사람이 가시적인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동의하는 언약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강한 구속력을 갖는다. 즉, 한 사람이 외적인 신앙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언약 안에 들어올 때, 그는 단지 언약이 부여하는 외적인 의무에만 순종해야 할 뿐 아니라 사실상 주로 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의 의무들을 온전히 따라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⁹³⁾

에드워즈가 외면언약과 내면언약의 구분을 부인한 의도는 후커가 명시적인 교회언약을 주장한 의도와 유사하다. 가시적인 교회가 가시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정회원으로 받을 때, 교회가 그 순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누군가가 외적으로 또는 가시적인 신앙고백으로 은혜언약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식과 마음에 내적인 의무에 대한 헌신, 그리고 내적으로 완전히 주의 은혜언약에 들어간다는 인식과 서약이 뒤따라야 함을 의미했다. 비록 나중에 그 사람의 신앙고백이 위선으로 밝혀진다고 해도,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는 그런 위선자가 많이 존재함에도, 세례를 받으면서 언약에 서약할 당시에 블레이크와 스토다드 식의 구분을 용인하는 것이 결코 당사자와 교회에 유익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교회를 세우신 의도도 아니기 때문이다. 에드워즈에게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언약을 통해 교회 안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부여되는 외적이고 내적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다. 그것이 외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야 했고, 사역자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요컨대, 에드워즈에게 ‘가시성’은 단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지닌 외형이 아니라, ‘개연성’을 지닌 것이었다.

6. 결론

1630년, 영국 청교도 회중주의자들이 뉴잉글랜드로 건너왔을 때, 그들은 교회언약을 통해 순수하고 경건한 신자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세우려는 꿈을 꾸었다. 그러나 한 세대가 채 지나기 전

90) David Hall, “Editor’s Introduction,”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2: *Ecclesiastical Writings*, ed. David Hall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94), 29-30.

91) 루더포드, 『생명언약』, 222-226.

92) Edwards, “Lectures On The Qualifications for Full Communion in the Church of Christ,” 362. 또한 Edwards, “The ‘Miscellanies,’ no. 345,” 418도 보라.

93) Edwards, “An Humble Inquiry,” 305.

에 그들의 소망은 다분히 이상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케임브리지 선언, 중도언약, 그리고 스토다드의 성찬이론 등을 거쳐 점점 더 타협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정을 겪는 동안 에드워즈는 다시 청교도 선조들의 정신으로 되돌아가기를 희망했으며, 그의 언약신학 안에서 교회에 대한 정의와 교인이 되는 자격, 그리고 교인의 의무 등에 관한 논의를 새롭게 하려고 노력했다.

에드워즈의 사상에서 교회는 두 가지 점에서 매우 영광스럽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와 맺으신 구속언약과 그리스도 안에서 맺으신 은혜언약으로 불러 모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점에서 영광스럽다. 교회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었으며, 그리스도와 구속언약을 맺으실 때 교회를 전제로 하신 것이다. 둘째로, 교회는 구속언약과 은혜언약에서 풍성한 유익을 얻기 때문에 영광스럽다. 교회와 맺으시는 언약에 대한 약속은 아직 교회가 탄생하기 이전인 창세전부터 있었다. 즉, 교회가 그리스도와와의 은혜언약 안에서 누리는 모든 유익은 창세전에 성부께서 그리스도와 맺으신 구속언약에서 이미 약속하신 풍성한 유익이다.

그러므로 에드워즈는 이처럼 영광스러운 교회 안으로 한 사람을 받아들일 때 신중하게 분별해야 하고, 당사자도 그 인식을 깊이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가시적인 교회와 가시적인 교회를 구분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시적인 교회가 영적으로 방만해도 된다는 가정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가시적인 교회 안에 여전히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있다 하더라도, 또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더욱, 교인의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교인들에게 언약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했다. 복음의 법칙에 따라 교회의 사역자들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세례를 엄격하게 시행해야 했으며,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특정한 고백과 서약을 통해 자신이 언약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했다. 물론 에드워즈가 사람들의 회심의 확실성을 요구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전통적인 개혁주의 신앙에 따라 사랑의 판단, 또는 가시성과 실재성, 그리고 개연성의 문제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다. 그 대신 에드워즈는 가시성과 개연성의 진실성을 높이기 위해 외면언약과 내면언약의 구분을 거절했으며, 명시적으로 서약하는 모든 교인이 반드시 내면적인 의무에 대해서도 복종을 서약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비록 에드워즈가 사용한 용어에서는 청교도 전통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주장한 근본정신에서는 오히려 뉴잉글랜드가 잃어버리고 있던 전통을 더 확고히 되살리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에드워즈가 교회를 언약공동체로 이해하고,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것을 엄숙한 언약행위로 강조한 것은 현대 한국교회에 주는 교훈이 크다고 할 것이다. ‘교인됨’에 대한 회의와 비판이 점차 격해져 가는 세대에서, 한국교회는 세례와 입교를 남용하지 않음으로써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함을 더 보존해야 하고, 세례받을 후보자를 교육함에도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뿐 아니라,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온 교인들을 지속적으로 양육하여 교회의 건강과 연합을 위한 노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소고에 이어 앞으로 에드워즈의 교회론에 관한 연구가 더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개혁주의 신앙고백들과 에드워즈의 교회론을 비교하거나, 에드워즈의 언약신학적인 교회론과 관련해서 교회 정치제도, 사역자들의 지위와 역할 문제, 그리고 성례 문제 등을 더 깊이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박응규.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시적 성도개념과 노스햄프턴 교회에서의 목회사역.” 『개혁논총』 46 (2018): 117-147.
- 송희준. “에드워즈의 종교적 양심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평택대학교, 2015

- 안상혁. “뉴잉글랜드 청교도의 교회언약과 절반언약의 성격.” 『한국교회사학회지』 30 (2011): 151-182.
- 원종천. 『청교도 언약사상: 개혁운동의 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 Ahn, Sang Hyuk. “Covenant of Conflict: The Controversy over the Church Covenant between Samuel Rutherford and Thomas Hooker.” Ph.D. diss, Calvin Theological Seminary, 2011.
- Bainton, Roland H.. *Yale and the Ministry: A History of Education for the Christian Ministry at Yale from the Founding in 1701*. New York: Harper & Brother, 1957.
- Bezzant, Rhys S.. *Jonathan Edwards and the Church*.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2013.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김종흡, 신보운, 이종성, 한철하 공역. 『기독교강요』.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6.
- Currie, Mary. “The Puritan Half-Way Covenants: A Contemporary Issue.” *Austin Seminary Bulletin* 95/3 (1979): 29-39.
- Danaher, William J.. “By Sensible Signs Represented: Jonathan Edwards’ Sermons on the Lord’s Supper.” *Pro Ecclesia* 7/3 (1998): 261-87.
- De Jong, Peter. *The Covenant Idea in New England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45.
- Edwards, Jonathan. *An Unpublished Essay of Edwards on the Trinity*. Edited by G. P. Fisher. New York: C. Scribner’s sons, 1903, 133.
- _____. “Christians a Chosen Generation.”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7, *Sermons and Discourses, 1730-1733*, edited by Mark Valeri.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99: 273-329.
- _____. “Lectures On The Qualifications for Full Communion in the Church of Christ.”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25: *Sermons and Discourses, 1743-1758*, edited by Wilson H. Kimnach.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2006: 349-441.
- _____. “Misrepresentation Corrected.”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2: *Ecclesiastical Writings*, edited by David Hall.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94: 349-504.
- _____. “The ‘Miscellanies,’ no. 2.”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3: *The “Miscellanies,” aa-zz, 1-500*, edited by Thomas A. Schafer.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94.
- _____. “The ‘Miscellanies,’ no. 299.”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3: *The “Miscellanies,” aa-zz, 1-500*, edited by Thomas A. Schafer.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94.
- _____. “The ‘Miscellanies,’ no. 335.”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3: *The “Miscellanies,” aa-zz, 1-500*, edited by Thomas A. Schafer.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94.
- _____. “The ‘Miscellanies,’ no. 338.”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3: *The “Miscellanies,” aa-zz, 1-500*, edited by Thomas A. Schafer.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94.
- _____. “The ‘Miscellanies,’ no. 339.”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3: *The “Miscellanies,” aa-zz, 1-500*, edited by Thomas A. Schafer.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94.
- _____. “The ‘Miscellanies,’ no. 345.”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3: *The “Miscellanies,” aa-zz, 1-500*, edited by Thomas A. Schafer.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94.

- Yale University, 1994.
- _____. “The ‘Miscellanies,’ no. 377.”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3: *The “Miscellanies,” aa-zz, 1-500*, edited by Thomas A. Schafer.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94.
- _____. “The ‘Miscellanies,’ no. 577.”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8: *The “Miscellanies,” 501-832*, edited by Ava Chamberlai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2000.
- _____. “The ‘Miscellanies,’ no. 595.”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8: *The “Miscellanies,” 501-832*, edited by Ava Chamberlai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2000.
- _____. “The ‘Miscellanies,’ no. 617.”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8: *The “Miscellanies,” 501-832*, edited by Ava Chamberlai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2000.
- _____. “The ‘Miscellanies,’ no. 825.”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8: *The “Miscellanies,” 501-832*, edited by Ava Chamberlai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2000.
- _____. “The ‘Miscellanies,’ no. 873.”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20: *The “Miscellanies,” 833-1152*, edited by Amy Plantinga Pauw.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2002.
- _____. “The ‘Miscellanies,’ no. 1062.”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20: *The “Miscellanies,” 833-1152*, edited by Amy Plantinga Pauw.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2002.
- _____. “The ‘Miscellanies,’ no. 1064.”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20: *The “Miscellanies,” 833-1152*, edited by Amy Plantinga Pauw.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2002.
- _____. “The ‘Miscellanies,’ no. 1091.”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20: *The “Miscellanies,” 833-1152*, edited by Amy Plantinga Pauw.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2002.
- _____.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3: *Original Sin*, ed. Clyde A. Holbrook.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70.
- _____. “To the Rev. Thomas Prince of Boston.”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4: *The Great Awakening*, edited by C. C. Goen, 544-557.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72.
- Gerbner, Katharine. “Beyond the ‘Halfway Covenant’: Church Membership, Extended Baptism, and Outreach in Cambridge, Massachusetts, 1656-1667.” *The New England Quarterly* 85/2 (2012): 281-301.
- Hart, Darryl G.. “The Church in Evangelical Theologies, Past and Future.” In *The Community of the Word: Toward an Evangelical Ecclesiology*, eds. M. Husbands and D. J. Treier, 23-40. Downers Grove, IL: IVP, 2005.
- Hooker, Thomas. *A Survey of the Summe of Church-discipline*. London: A. M, 1648.
- _____. *The Covenant of Grace Opened*. London: G. Dawson, 1649.
- Keller, Karl. “The Loose, Large Principles of Solomon Stoddard.” *Early American Literature* 16 (1981): 27-41;
- McDermott, Gerald R.. “Jonathan Edwards, Theologian for the Church.” *Reformation & Revival*, 12/3 (2003): 11-23.
- Pope, R. G.. *The Half-way Covenant: Church Membership in Puritan New England*.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1969.

- Rutherford, Samuel. *The Covenant of Life Opened*. 안상혁 역. 『생명언약』 수원: 합신대학교출판부, 2018.
- Stoddard, Solomon. *An Appeal to the Learned*. Boston, MA: B. Green, 1709.
- Strange, Alan D. “Jonathan Edwards on Visible Sainthood: The Communion Controversy in Northampton.” *Mid-America Journal of Theology* 14/1 (2003): 97-138.
- Stuart, Robert Lee. “‘Mr. Stoddard’s Way’: Church and Sacraments in Northampton.” *American Quarterly* 24/2 (1972): 243-253.
- Sweeney, Douglas A. “Church.” In *The Princeton Companion to Jonathan Edwards*, edited by Sang Hyun Lee, 167-89.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2005.
- Walker, Williston. *The Creeds and Platforms of Congregationalism*. New York, NY: Scribner, 1893.
- Watts, Isaac. *The Holiness of Times, Places, and People under the Jewish and Christian Dispensations Consider’d and Compared, in Several Discourses*. London: Bible and Crown, 1738.